

주요국 관세·원산지 동향

관세정책, 통상집행, 공급망·환경규제 등 주요 이슈를
원산지·공급망 리스크 관점에서 선별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미국 동향은 직전 발간호 이후 신규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국 동향은 최근 발생한 이슈를 중심으로 반영합니다.

2026
7월호



미국 동향



USMCA 공동 검토 진행 현황

- 미국은 현행 협정 연장에 반대, 캐나다·멕시코는 찬성
- 자동차 USMCA 이행현황 보고서 발표(7.1.)



무역법 제301조 관세 조사

-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소명 절차 진행
- 강제노동 물품 수입 금지 미조치로 한국산 12.5% 부과 결정
- 단, MFN 관세와 합산하여 최대 12.5% 적용



관세회피 단속 동향

- 제3국 조립·환적을 통한 원산지 허위신고 및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결정 사례

주요국 동향



관세·통관 관리체계 개편

- 자동차·철강·섬유 등 전략산업 일부 물품의 수입관세율 5~50%로 인상 및 통관관리 강화
- 원산지 허위증명 등 대외무역 위반행위 처벌 강화



미국의 군사·희토류 관련 기업에 수출통제 및 정부조달 제한

- 미국의 중국 군사기업 목록 확대에 대응해 미국 군사 관련 기업 10개사를 수출통제 관리 대상에 추가



공공조달에 유럽산 우대 기준 도입 검토

- 공공조달에서 EU기업과 정부조달협정·FTA 상대국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 도입 검토

• 멕시코가 관세율 인상과 통관관리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멕시코로 수출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함

미국 관세·원산지 동향 최신 주요 뉴스



미국은 비료 공급 부족에 대응해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부과되는 일부 관세를 최대 8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함

Reuters (6.30.)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달리 USMCA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협정의 미비점과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연례 재검토 및 후속 협상을 추진함

연합뉴스 (7.2.)



상무부는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 및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 우려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으나, 즉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6개월간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을 추진함

Reuters (7.10.)



미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6월 관세 환급액이 492억 달러로 관세 징수액을 초과해 관세수입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연방 재정적자가 1,200억 달러로 확대됨

Reuters (7.14.)



미국은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7월 22일부터 일부 브라질산 제품에 25%의 제301조 관세를 부과함

AP (7.16.)



1 USMCA 갱신(연장) 공동 검토 진행 현황

USMCA 공동검토 절차 개요

- USMCA 발효 6주년인 2026년 7월 1일 첫 공동 검토를 실시 (2020.07.01. 발효)

USMCA 제34.7조(검토 및 기간 연장) 주요 내용

- 발효일로부터 16년이 경과하면 협정 종료
- 발효 후 6년(2026.7.1.)이 되는 날, 위원회는 첫 공동 검토를 실시
- 첫 공동 검토에서 모든 당사국의 서면으로 연장의사가 없을 시 잔여기간(~2036년, 10년) 동안 매년 공동 검토를 실시함
- 협정 만료 전에 모든 당사국의 연장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되면 16년 추가 연장됨

USMCA 개정에 대한 국가별 입장 및 협의현황

- ▶ 미국·멕시코·캐나다 정부 대표로 구성된 USMCA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 FTC)의 협정 갱신(연장) “공동 검토” 결과, 미국 반대, 캐나다·멕시코 찬성
- **(미국)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음.** 다만 협정의 문제점¹⁾과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과 협의를 계속할 의사를 표현하며, 관련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현행 협정은 계속 유효함을 강조
- **(캐나다) USMCA는 북미 전역의 수백만 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멕시코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을 보장해 왔다고 평가하며, 협정 갱신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함.** 향후 미국과 철강·알루미늄·자동차·목재에 대한 부문별 관세 문제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을 협의하고자 함
- **(멕시코) USMCA의 유효기간 연장을 지지하며,** 자국 수출품의 80% 이상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가장 우대된 관세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 7월 20일 주간 멕시코시티에서 미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검토를 이어갈 계획

[2026년 USMCA 갱신 검토 타임라인]

날짜	주요 내용
3.18	미국·멕시코 USMCA 공동 검토 전 기술 논의 • 북미 내 생산 및 제조업 고용 확대, 비시장경제 투입재 제한 등 논의
5.28~29.	미국·멕시코 제1차 양자 협상 • 미국은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자동차 원산지규정, 제3국의 USMCA 혜택 무임승차 문제 등 논의
6.15~17.	미국·멕시코 제2차 양자 협상 • 농업·노동·환경에 대한 개념적 논의 개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교역 등 논의 • USMCA 제12장 분야별 부속서의 이행을 검토할 위원회 설치 지지
7.1.	제1차 공동 검토 결과 발표 • 미국은 협정의 문제점과 무역적자를 이유로 현재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음 • 갱신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현행 협정은 유효함
7.21~23	미국·멕시코 제3차 양자 협상 예정 • 협상 진행상황 점검 및 북미 제조업 확대, 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등 논의 • 2026년 9월 제4차 양자협상 개최 예정

1) USTR 2026 무역정책 어젠다는 협정의 문제점으로 멕시코의 에너지·광업 분야 자국 기업 우대조치와 투자환경 악화,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접근 약속 위반 및 차별적·제한적인 디지털 조치 등을 지적함

USTR, 2026 자동차 제품 USMCA 이행현황 의회 보고 주요내용

-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1일 의회 제출 보고서를 통해 현행 규정이 북미 내 투자·현지조달 확대와 자동차부품 산업의 고용·임금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멕시코·캐나다 생산 차량의 미국산 부품 비중 감소와 멕시코와의 자동차 무역적자 지속 등을 운영상 한계로 명시함
- **(2036년까지 USMCA는 유효)** 미국도 현행 형태의 협정 갱신에 동의하지 않을 뿐 멕시코·캐나다와 협의를 계속할 의사를 밝힌 만큼, 협정 만료 시점인 2036년 이전까지 연장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

[USMCA 자동차 원산지규정 운영현황 관련 의회 보고서]

구분	주요 내용
운영성과	자동차 원산지규정이 북미 내 생산·조달과 투자 확대에 기여했으며, 미국 자동차부품의 고용과 임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
특혜 활용	2025년 캐나다·멕시코산 차량의 USMCA 특혜 활용률은 94.7%, 자동차부품은 70.9%로 나타남
교역·공급망 구조	미국의 대멕시코 자동차·부품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멕시코·캐나다 생산 차량에서 미국산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국산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함
규정 준수	CBP는 2021~2025년 자동차부품·중고차의 USMCA 특혜신청 961건을 검증하여 역내가치비율 미충족, 자료 부족 또는 미응답에 해당하는 230건을 불충족으로 판정함
애로사항	복잡한 원산지·인증요건과 하위 공급업체의 인증서 확보 부담이 부품업체, 특히 소규모 공급업체에 상당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함
공급망 과제	반도체·핵심광물·영구자석 등 주요 투입재의 역외 의존과 중국의 자동차 과잉생산 및 멕시코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함
검토 과제	미국·북미산 핵심 투입재 사용 확대 및 제3국 의존 축소 - 반도체·회로기판·디스플레이 등 핵심 전자부품의 북미 내 생산을 확대하고 제3국산 투입재 의존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신기술·생산공정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원산지규정 개편 -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에서 창출되는 북미 역내 가치와 전기구동장치를 핵심부품 목록 및 역내가치 산정체계에 반영 자동차 원산지규정의 인증·보고 절차 간소화 -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인증·보고 부담을 줄이고, 명확한 역내가치 계산지침과 표준화된 디지털 준수도구 등을 마련

- ▶ USTR의 자동차 제품 이행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USMCA 개정논의에서는 전체 차량 가치에서 전자부품·배터리 시스템·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 등 차량 제조의 기술적 구조적 변화에 맞춰,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 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② 무역법 제301조 관세 조사

국가별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추가관세안에 대한 주요국의 소명

-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2일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경제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2.5%의 추가관세 부과를 제안함
- USTR은 관세조치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함. 서면의견 제출은 7월 6일까지, 청문회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결과를 USTR 공식 웹사이트²⁾를 통해 공개함
- 주요국은 의견수렴 및 청문절차를 통해 대체로 ①USTR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과 관련된 정부의 법률 및 집행에 대한 평가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점과 ②USTR 발표 이후 정부가 이 분야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했고 이를 근거로 USTR이 자국 수출품에 대해 제안된 관세를 재고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함

국가/경제권	핵심 대응 및 소명내용
중국	• 외교부 정례 브리핑, 상무부 담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성명 등을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보호무역 조치이자 강제노동의 정치적 남용임을 규탄 • USTR 서면 제출보다는 고위급 양자 채널 및 대외 발표를 통한 정치·외교적 대응에 집중
EU	• 집행위원회(EC) 차원에서 "EU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강제노동 규정을 보유·집행 중이므로 미국의 관세 제안은 정당화될 수 없다"³⁾는 부당성을 개진 • USTR 서면 제출 외에도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 등 양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자체 기업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집행력 보완 조치를 실행
인도	• USTR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인도의 강제노동 금지 법적 체계를 증언하고 관세 조치 권고의 불합리성을 직접 소명 • 이에 더해 대외무역고시(Notification No. 23/2026-27) 등 수입 금지 관련 국내 법제 및 공급망 검증 기준을 정비⁴⁾하는 능동적 대응을 단행
캐나다	• USTR의 조치에 대응하여 강제노동 생산품의 국경 통제 및 수입 금지 집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신규 법안(Bill C-35)⁵⁾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선제적인 법제 보완 조치를 추진 • 관세 부과 부당성을 소명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취함
한국	• USTR 보고서상 지적된 일부 통계 해석 오류와 오해 소지에 대해 서면을 통해 정밀 소명을 진행 • 동시에 K-ESG 가이드라인 확산,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등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을 강조하며 대미 협의를 지속

2) <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

Section 301 - Failure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3) 2026년 6월 3일 집행위 정례 브리핑 시 통상 담당 부수석대변인(Olof Gill)이 구두성명 발표

4) Notification No. 23/2026-27,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ated July 13, 2026.

5) <https://www.canada.ca/en/global-affairs/news/2026/06/canada-tables-legislation-to-strengthen-prohibition-on-goods-produced-with-forced-labour.html>

국가별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추가관세 부과

- ▶ (시기) 2026년 7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미 동부시간)
- ▶ (방식) 조사대상 60개 경제권의 전 품목에 10% 또는 12.5%의 국가별 추가관세 부과
- (상한세율 적용) EU·대만은 MFN 관세와 합산하여 최대 10%
한국·일본·스위스는 최대 12.5%가 되도록 적용
- (정액세율 추가적용) 캐나다, 멕시코는 MFN 관세 + 10% / 중국, 베트남은 MFN 관세 + 12.5%
- (예외 품목) 무역확장법 제232조 대상 품목, 민간항공기 및 부품, 의약품 제조용 물품 등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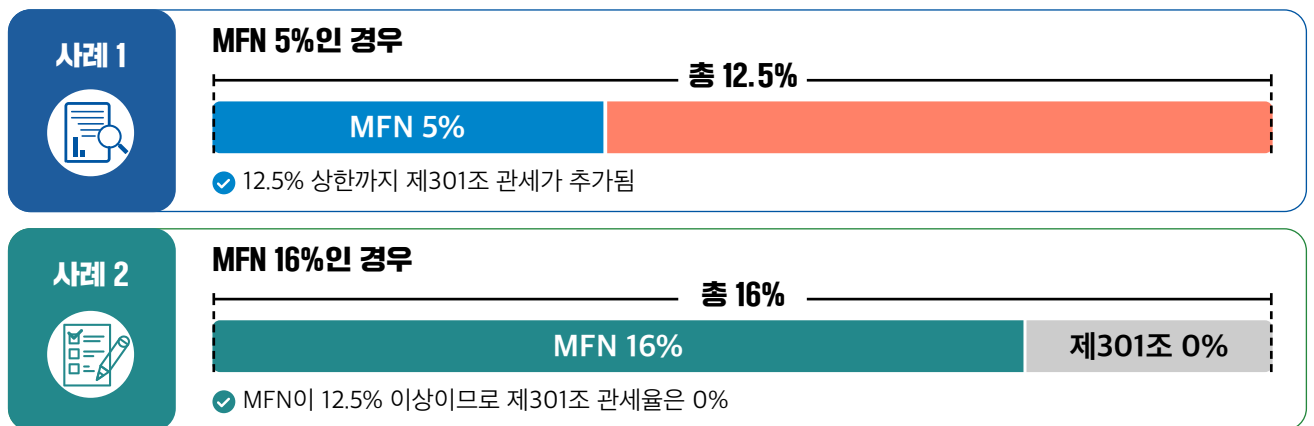
날짜	적용 관세율	적용 방식	해당 경제권
①	10% 정액	MFN+10%	캐나다, 멕시코 등 17개 경제권 ⁶⁾
②	10% 상한	MFN+제301조= 10%	EU, 대만
	12.5% 상한	MFN+제301조= 12.5%	한국, 일본, 스위스
③	12.5% 정액	MFN+12.5%	중국, 베트남 등 38개 경제권 ⁷⁾

* 주) 국가별 추가 합의 내용

- ① 5개국(온두라스·인도·스리랑카·트리니다드토바고·요르단)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도입 또는 협정상 약속을 이유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조정
- ② 4개국(방글라데시·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미국산 면화·섬유 원자재 수입 실적에 따라 일정 물량의 섬유·의류에 대해 제301조 추가관세를 면제하는 관세율할당제도(TRQ) 도입

[한국산 12.5% 상한 적용 예시]

한국산 물품은 MFN 관세와 제301조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적용되며, MFN이 12.5% 이상이면 제301조 관세율은 0%



핵심 : 한국은 '12.5% 정액'이 아니라 'MFN 포함 총 12.5% 상한' 방식으로 적용됨

- ▶ 7월 24일 오전 12시 1분에 종료되는 제122조 관세를 대체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한국은 MFN 관세를 포함하여 12.5%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당초 제안안보다 관세 부담이 완화됨

6)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영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7) 알제리, 앙골라, 호주, 바하마, 바레인,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가이아나, 홍콩,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태국, 튀르키예,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3 CBP, 제3국 조립·환적을 통한 원산지 허위신고 및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결정⁸⁾

□ EAPA 사건번호 8163(2026.6.23.)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조사 대상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태양전지 및 태양광 모듈 • 관련 조치: 말레이시아·베트남산 태양전지와 이를 사용해 제3국에서 조립한 모듈에 대한 반덤핑(2025.6.24.)·상계관세 명령(2025.6.24.)
조사 배경	인도에서 조립된 태양광 모듈에 베트남·말레이시아산 태양전지가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인도산으로 신고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적용을 회피하였다는 혐의 제기
조사 결과	현장검증에서 생산기록, 태양전지 구매자료 및 미국 수입신고 내역을 대조·역추적한 결과, 말레이시아·베트남산 태양전지를 사용해 인도에서 조립한 태양광 모듈이 미국으로 수입된 사실이 확인됨 해당 모듈은 말레이시아·베트남산 태양전지와 이를 사용해 제3국에서 조립한 모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대상 수입분에 해당함
CBP 판단	해당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은 대상국산 태양전지와 해당 태양전지를 사용해 제3국에서 조립한 모듈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명령 적용 여부는 모듈 조립국이 아닌 투입 태양전지의 원산지와 제조자를 기준으로 판단됨 이에 수입자가 약 4년간 원산지를 인도로 신고한 것을 허위신고로 판단해 회피를 인정함 조사 협조를 고려해 불리한 추론은 적용하지 않되, 회피판정 자체는 유지함

□ EAPA 사건번호 8143(2026.6.29.)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조사 대상	미국 수입업체 2개사(社)가 태국 생산업체로부터 수입한 유정용 강관(OCTG) • 관련 조치: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상계(2010.1.20.)·반덤핑관세 명령(2010.5.21.)
조사 배경	중국산 철강 빌렛을 사용해 태국 생산업체가 가공·생산한 OCTG가 중국산 OCTG에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혐의 제기
조사 결과	제출된 생산자료가 전체 생산공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증명서의 작성일도 실제 생산일보다 상당히 늦어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됨 중국 관계사가 OCTG 생산설비를 모두 태국으로 이전하여 생산능력이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조사기간 중 해당 관계사가 중국에서 OCTG를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됨 또한 환적 지원 정황이 확인된 태국 물류업체를 이용하였고, 조사 개시 통보 6일 후 설립된 미국 법인과 관계 부인하기 위해 이메일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됨
CBP 판단	상무부가 중국산 철강 빌렛을 사용하여 태국에서 생산한 해당 OCTG를 중국산 OCTG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CBP는 이를 일반수입신고(type 01)로 신고하고 관련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를 관세회피로 판정함 또한 미국 법인과 관계에 관한 허위진술과 이메일 조작 등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불리한 추론을 적용함

□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품목과 국가뿐만 아니라, 투입재의 원산지 및 제3국에서의 조립·환적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8) 2026년 6월 CBP가 관세회피로 최종결정한 EAPA(Enforce and Protect Act, 집행 및 보호법) 사건 3건(7839, 8163, 8143) 중 원산지 신고와 관련된 2건을 소개함



2026년 미국의 관세부와 현황표

구분	원산지	트럼프 2기 추가 관세			부과 구조	기존 적용 관세 ²⁾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관세부과율		무역법 제301조 ³⁾	기본관세 자유무역협정(FTA)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¹⁾	한국·유럽연합(EU)·일본	15%		15%	품목별 관세 +	25~100% (전기차)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5%		25%				
	미국·멕시코·캐나다·멕시코	① 완성차 조건: 상무부 승인 대상: 비미국산부품만 25% ② 자동차부품 0%		① 완성차 비미국산부품만 25% ② 자동차부품 0%				
	USMCA 미충족	25%		25%				
철강·알루미늄·구리 중심 (부속서 1-A)	중국	50%		50%	품목별 관세 +	25%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25%		25%				
	그 외 국가	50%		50%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중심 (부속서 1-B)	중국	25%		25%	품목별 관세 +	25%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15%		15%				
	그 외 국가	25%		25%				
고정식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 (부속서 3) ⁴⁾	중국	15%		15%	품목별 관세 +	7.5% or 25%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러시아·벨라루스·쿠바·북한	25%		25%				
	그 외 국가	15%		15%				
이동식 산업기계·농기계 등 일부 제품 (부속서 1-C) ⁵⁾	한국·EU·일본 등	15%		15%	품목별 관세 +	25%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5%		25%				
반도체 및 파생상품 ⁶⁾	한국·EU·일본	25%		25%	품목별 관세 +	25%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USMCA 미충족							
그 외 제품 ⁷⁾	한국·일본 ⁸⁾		12.5%	12.5%	국가별 관세 +	7.5%~100%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2.5%	12.5%				
	EU		10%	10%				
	캐나다·멕시코			0%				
	USMCA 충족 USMCA 미충족		10%	10%				

- 1) 한국은 EU·일본과 동일한 15%로 합의(기본세율 포함,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버스 및 기타 차량 (제8702호: 운전자 포함 10명 이상 수송할 수 있는 차량, 미국 주석 38(c) 열거품목)에는 10%가 적용되고, 중대형차량(제8701·8704·8705·8706·8709호, 미국주석 38(b) 열거 품목)에는 25%가 적용됨
- 2) 반덤핑·상계관세와 기본관세/FTA는 중복부과가 되지 않음. 단, 301조와 기본관세/FTA 및 301조와 반덤핑·상계관세는 중복 부과 가능
- 3)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터리와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25%), 광물자원(25%), 영구자석(25%), 반도체(50%), 태양전지(50%), 전기차(100%) 등
- 4) 포고령 제11021호(제11032호에서 적용 대상 품목 일부 추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단, 러시아산 알루미늄 200% 관세는 계속 적용됨
- 5) 포고령 제11032호.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6) 2026년 1월 15일부터 적용. 제8471.50호·제8471.80호·제8473.30호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반도체에만 적용됨
- 7) 의약품의 경우 포고령 제11020호 부속서 3의 회사에는 7월 31일 이후, 그 외는 9월 29일 이후 100%, 한국은 협정에 따라 15%가 적용될 예정임
목재 및 파생상품의 경우 한국·EU·일본은 10% 또는 15%, 그 외는 10% 또는 25%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25.10.14.~	2027.01.01.~	비고
연목	10%	10%	무역협정 원료국가 영국: 10% 한국·EU·일본: 15% (한국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적용)
가구			
목재가구	25%	30%	
주방 캐비닛, 세면대	25%	50%	

- 8) MFN 세율이 12.5% 이상이면 MFN 세율만 적용함. 구체적인 부과방식은 4쪽 참조

날짜	내용	출처
1.14.	1월 15일부터 부속서에 명시된 기술요건 충족하는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25% 관세 부과 -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서의 사용·연구개발 등 제외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그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 조정 백악관
1.29.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절차 마련	쿠바 정부의 대미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백악관
2.6.	이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승인	이란 정부의 대미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백악관
2.6.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이행 등을 이유로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25% 추가 관세 철폐	러시아 연방 정부의 대미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관세 조정 백악관
2.6.	미국은 인도산 수입품에 18% 상호관세를 적용, 인도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관세 인하 등 잠정 합의	미국-인도 공동 성명 백악관
2.9.	미국은 방글라데시산 제품에 19% 상호관세를 적용, 방글라데시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시장접근 확대 등 합의	미국-방글라데시 상호 무역 협정에 대한 공동성명 백악관
2.12.	미국은 북마케도니아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유지, 북마케도니아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관세 철폐 등 합의	미국-북마케도니아 간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의 틀에 관한 공동 성명 백악관
2.19.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 상호관세를 유지,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합의	미국-인도네시아 무역 협정 최종 확정 백악관
2.20.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마약관세 등이 위임 권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결	Learning Resources, Inc., et al. v.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t al. (No. 24-1287) 미국 연방대법원
2.20.	대법원 판결에 따라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을 발령	특정 관세 조치 종료 백악관
2.20.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50일간 모든 수입품에 10% 임시 수입 추가세 부과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한 임시 수입 추가세 부과 백악관
2.20.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중단 조치 지속	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 면세(de minimis) 적용 중단 지속 백악관
3.4.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미정산 및 미확정 정산 건에 대해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정산·재정산하도록 명령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3.5.	미국 24개 주는 무역법 제122조의 국제수지 적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임시 수입 추가세의 무효 확인 및 집행 금지를 청구	State of Oregon et al. v. Trump et al. (No. 26-01472) 미국 국제무역법원
3.6.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즉시 이행 불가 진술을 근거로 IEEPA 관세 환급 명령의 즉시 이행 부분을 유예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3.11.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설비 관련 조치·정책·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	제301조 조사 개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 관련 특정 경제권의 조치·정책·관행 연방관보
3.12.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60개 경제권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부과 및 집행 관련 조치·정책·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	제301조 조사 개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권의 조치·정책·관행 연방관보

3.12.	• CBP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해 개발 중인 ACE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의 개발 진척도를 항목별 40~80% 수준으로 보고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4.2.	•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원료에 100% 관세 적용 발표, 한국은 한-미 합의에 따라 15% 적용 예정 • 국내생산 이전 승인 기업, 제네릭 의약품 등 감면·예외 가능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 백악관
4.2.	• 4월 6일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금속 함량 비율이 아닌 수입품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50%, 25%, 15% 차등 관세를 적용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강철, 구리 수입 조정 조치 강화 백악관
4.6.	• IEEPA 관세 환급 대표 사건인 Atmus Filtration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취하에 따라 소송 종료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4.13.	• CBP는 4월 20일 ACE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을 배포하고, 수입업자·통관대리인의 환급 신청 시 관세 차액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	CSMS #68340863 -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CAPE 기능 배포 안내 관세국경보호청
5.6.	• USTR은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혁신 관련 제301조 관세 조치에 대한 두 번째 4년 주기 검토를 개시	제2차 4년 주기 검토 개시: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혁신 관련 법·정책·관행 미국 무역대표부
5.6.	• CBP는 제232조 알루미늄·철강·구리 관세 관련 무관세 코드 신설 등 기술적 수정 사항을 공지	CSMS #68554727 - 알루미늄, 철강 및 구리 수입에 대한 제232조 관세 기술적 수정 안내 관세국경보호청
5.27.	• CBP는 대만산 자동차부품, 목재제품 및 민간항공기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 조정과 관련해 통관 신고 지침을 공지	CSMS #68762890 - 미-대만 무역안보협정 관련 관세 조정사항 이행 지침 관세국경보호청
6.1.	•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동식 산업장비·농기계 등 일부 제품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임시 감면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철강,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 체계 추가 조정 백악관
6.3.	• 수입신고인(IOR) 자격·보증·식별정보 요건 강화, 공급망·제품정보 제출의무 및 우선 단속 대상 정비	세관 집행 강화 백악관
6.3.	•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도입·집행 미흡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 또는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단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도입 및 효과적 집행 실패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
6.15.	•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중국산 List 3·4A 품목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확대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유지	HMTX Industries, LLC v. United States (No. 25-1012) 미국 연방대법원
6.18.	• USTR은 독일의 의약품 가격정책이 미국에 과도한 글로벌 연구개발비 부담을 초래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제301조 조사를 개시	USTR, 독일의 혁신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과소지불 관련 301조 조사 개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6.25.	•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관세 인하·철폐와 투자협력 확대를 포함한 초기 무역합의에 도달하고 상호무역·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화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무역협상의 조기 성과를 발표하고 상호무역·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화 미국 무역대표부
6.29.	• 미국은 비료 공급 부족에 대응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해 최대 8개월간 관세 및 추정관세 예치금 징수를 면제	비상사태 선포 및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의 한시적 무관세 수입 승인 백악관
7.9.	• 미국은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 및 관련 부품에 즉시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교역상대국과 협상한 뒤 180일 이내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 및 항공기·엔진 부품의 수입 조정 백악관

주요국 동향

1 멕시코 관세·통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

- 멕시코의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인 「플랜 멕시코(Plan México)」에 따라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확대하여 자동차·철강·신발·섬유·의류 등 17개 전략산업의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①멕시코 관세율표(LIGIE 관세율표)를 개정하여 1,463개 세번의 일반 관세율을 인상함. 이와 함께 ② 관세법(Ley Aduanera) 개정으로 세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③연방조세법전 개정을 통해 원산지 허위증명 등 관세회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

수출입일반관세법(LIGIE) 관세율표 개정: 일반 관세율 인상

- (17개 전략산업 관련 관세율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철강·신발·섬유·의류 등 17개 전략산업⁹⁾에 속하는 1,463개 8단위 세번의 일반 수입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적용함

[주요 물품 관세율 변화]

멕시코 세번	품명	개정 전 관세율	개정 후 관세율	인상 폭
8703.23.99	점화식 내연기관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기타)	20%	50%	+30%p
8544.30.99	운송수단용 점화배선세트 및 기타 배선세트(기타)	5%	25%	+20%p
8708.40.99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기타)	5%	25%	+20%p
7209.17.01	폭 600mm 이상 철·비합금강 냉간압연 코일 중 두께 0.5~1mm인 것	25%	35%	+10%p
7210.49.99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중 기타 방식으로 아연도금한 것(기타)	25%	35%	+10%p
3920.62.02	이축연신 폴리에스터 필름(BOPET 필름)	7%	18%	+11%p

*HS 8단위 세번별로 5~50%의 관세율 차등 설정

**대멕시코 수출실적이 있는 자동차·철강 관련 품목을 선정하고, 멕시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작성

- (FTA 미체결국: 인상된 일반 관세율 적용) FTA체결국산 물품은 협정상 원산지 요건 충족시 협정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을 포함한 FTA 미체결국산 물품은 원칙적으로 이번에 인상된 일반 관세율의 적용을 받음
- (PROSEC¹⁰⁾ 연계 보완조치) 다만, 이번 관세율 인상이 완성품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가 투입재로 사용하는 철강품목에도 적용되어 생산비용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2026년 4월 23일 별도의 LIGIE·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 개정령을 공포하여, 철강 품목 중 10개 세번을 PROSEC 적용대상에 추가함. 이에 따라 PROSEC 승인을 받은 전기·전자·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의 생산자가 해당 투입재를 생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0%의 PROSEC 세율을 적용함

9) 자동차부품, 경자동차, 의류, 플라스틱, 철강, 가전제품, 완구, 섬유, 가구, 신발, 가죽제품·가죽잡화 종이·판지, 오토바이, 알루미늄, 트레일러, 유리, 화장품

10) PROSEC(Programas de Promoción Sectorial)은 특정 산업의 생산자가 원산지에 관계없이 생산에 사용하는 원자재·부품·기계설비를 0~5%의 우대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산업부문별 우대관세 프로그램

[PROSEC 세율 적용대상 멕시코 세번]

7208.26.01	7208.27.01	7208.39.01	7208.51.04	7209.16.01
7209.17.01	7211.29.99	7225.19.99	7225.30.91	7225.40.91

관세법(Ley Aduanera) 개정: 통관관리 체계 개편으로 세관 관리·감독 강화

- 멕시코 정부는 대외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밀수·부패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관세행정의 현대화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여 통관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주체의 책임을 확대하는 동시에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내용
통관 관리 디지털화	• 통관·보세시설에 전자재고관리·영상감시·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해 세관당국 원격 접근 허용(제10·14·14-A·14-D조) • 송장·계약서·대금지급 증빙 등 전자서류철 구비·보관 의무 확대(제59조)
관세사·관세법인 책임 강화	• 면책조항 삭제, 관세·기타조세·상계관세 연대납부책임 확대(제53·54조) • 신고정보 진실성·세액산정·품목분류 확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관세사·관세법인이 직접 부담(제162·195조)
관세사 면허체계 개편	• 관세사·관세법인 면허·허가 유효기간 10년→20년 연장, 3년마다 인증 갱신 의무화(제159·159 bis조) • 관세위원회가 면허 부여·정지·취소·연장 심의(제167-D조)
제제사유 확대 및 수준강화	• 허위신고 등 면허 정지·취소 사유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제164·165·167-G조)

출처: 관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연방조세법전(CFF)¹¹⁾ 개정을 통한 대외무역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연방조세법전」 개정은 멕시코 정부의 연간 재정·세제 개편안인 '2026년도 경제패키지(Paquete Económico 2026)'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며,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
- **(밀수 관련 형사처벌 대상 확대)**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허위증명을 밀수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임시수입물품 및 보세화물 관리의무 위반행위를 밀수 추정 사유로 추가·확대함

① 원산지 허위증명

- 멕시코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증명한 경우, 밀수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함 (제105조 제XVIII호)

② 임시수입제도 악용

- 임시수입된 물품을 실재하지 않는 거래나 위장된 법률행위를 통해 이전하여 반송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세관당국이 승인한 장소에 반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반출하는 경우 밀수로 추정하여 처벌함 (제103조 제XXIV호·제XXV호, 제104조 제V호)

③ 보세화물 관리의무 위반

- 보세창고에 불가항력으로 물건이 기한 내 도착하지 못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관·운송 관리자가 물품의 부족 또는 기한 내 미도착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보세창고 운영자가 세금 납부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등을 밀수 추정 사유로 추가하여 처벌함 (제103조 제XIII호·제XXVI호·제XXVII호, 제104조 제V호)

11)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2025년 9월 8일 연방행정부가 제출한 연방조세법전 개정안의 하원관보 공개를 시작으로 당해 10월 하원과 상원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됨

- **(세무당국 조사·처벌 권한 강화)** 실제 거래를 증명하지 못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법률상 허위로 간주하고(제29-A조 제IX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매와 매매광고 게시를 허용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킴(제113 Bis조). 아울러 조사 과정의 디지털 증거수집 방식을 명시하고(제42조), 고의적 허위진술·위변조서류 제출에 3~6년 징역형을 규정함(제115 Ter조)
- ▶ 멕시코는 관세율 조정과 통관·조세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품목별 관세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통관절차 및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중국 미국 군사·희토류 관련 기업에 수출통제 및 정부조달 제한¹²⁾

- 중국 상무부는 6월 22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미국 정부가 알리바바, BYD, 바이두 등 중국 기업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추가한 데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 관련 기업 10개사를 수출통제 관리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함

* AVEOX, Red Cat Holdings, Teal Drones, IMSAR, Jaia Robotics, Ball Aerospace & Technologies, Oshkosh Defense, L3Harris Maritime Services, MP Materials, USA Rare Earth

-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대한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의 직접 수출과 제3국을 통한 이전·공급이 금지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수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중국 재정부도 같은 날 중국 정부기관이 **미국 기업 46개사가 생산한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함
- 미국의 대중 제재와 중국의 대응조치가 반복되면서 미·중 간 수출통제 및 공급망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2 EU 공공조달에 유럽산 우대 기준 도입 검토¹³⁾

- EU 집행위원회는 대규모 **공공조달에서 유럽산 함량 50% 미만 입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편 초안을 마련 중이며, 공식 제안은 2026.9. 예정(보도 기준)
- 채택 시 발주기관은 **EU·정부조달협정·FTA 상대국 기업을 우대**하고, 중국 등 비협정국 기업의 주요 계약 입찰을 배제할 수 있게 되나, 참여 자체를 일률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에 선택 근거를 부여하는 데 초점
 -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가 리스본 지하철 입찰에서 보조금으로 경쟁을 왜곡한 중국 철도차량업체를 배제 조건부로 입찰을 진행한 사례에서 보듯 중국 기업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
- 이번 개편안은 산업가속화법(EU산 요건을 명문화해 비FTA·비GPA국 기업의 참여를 사실상 제약)과 달리 "EU기업 우대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둔 완화된 접근을 취함



12) 상무부 보도자료(6.22.), 연합뉴스(6.22.), AP(6.23.) 등 참고

13) Reuters(7.9.), FINANCIAL TIMES(7.9.) 등 참고